

미국의 의무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홍보배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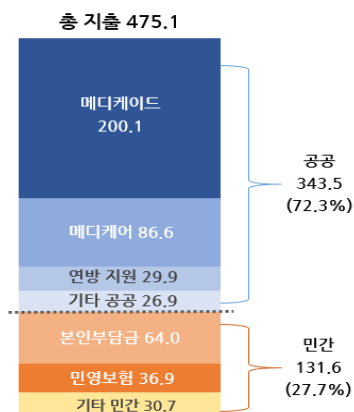
요약

미국 공공 의료보험의 장기요양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공공 의료보험 및 민영 장기요양보험의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장기요양서비스 보장 공백이 발생함. 이에 따라 최근 워싱턴주에서는 주정부의 예산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보장 대상을 확대하고자 근로자 의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워싱턴 주에 이어 펜실베이니아·뉴욕·캘리포니아주도 의무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향후 더 많은 주에서 유사한 정책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인구 고령화 등으로 미국의 장기요양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메디케이드 등 공공 의료보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민영보험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미국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총지출은 4,751억 달러로(미국 GDP의 약 2.3%), 이중 공공부문(3,435억 달러)이 72.3%, 민간부문(1,316억 달러)이 27.7%를 차지함(그림 1) 참조
 - 공공부문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가 총지출의 42.1%(2,001억 달러)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민간부문에서 민영보험은 7.8%(369억 달러)에 그침
 - 장기요양서비스 총지출에서 메디케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0.0%에서 2021년 42.1%로 12.1%p 증가한 반면 민영보험의 비중은 10% 미만임(그림 2) 참조

〈그림 1〉 미국 2020년 장기요양 자원별 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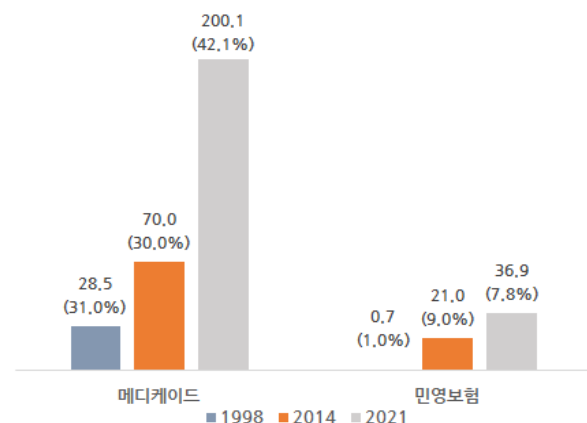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2)

〈그림 2〉 미국 메디케이드·민영보험의 장기요양지출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괄호는 장기요양 총지출 대비 비중임

자료: 김찬우 외;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2)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 공공 의료보험의 장기요양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연방·주정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편, 공공 의료보험 및 민영보험의 수혜 대상이 제한적임에 따라 미국인 다수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2019년 기준 워싱턴주 메디케이드의 장기요양 지출은 주 운영예산의 6% 수준이었으며, 현 제도가 지속되는 경우 2030년에는 현 규모의 2배인 12%에 달하여 약 6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¹⁾
 - 공공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장기요양 수혜대상자는 극빈층 및 의료, 요양비로 재정자산을 소진한 개인으로 한정되며,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없는 개인은 가족 간병인에게 의존하거나 개인이 장기요양 비용을 전부 감당해야 함
 - 그러나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개인이 민영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는 비율도 높지 않은 실정이며, 65세 이상 미국인 중 민영 장기요양보험으로 보장받는 비중은 약 13% 수준에 불과함²⁾
 - 이처럼 민영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층이 아니거나 메디케이드 기준을 충족할 만큼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근로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보장 공백(Coverage gap)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워싱턴주는 주정부의 예산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보장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근로자 대상 의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워싱턴주 하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지원 신탁법(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Trust Act)이 통과되어 '23년 7월부터 워싱턴 주정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소득의 0.58%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함
 - 부과된 보험료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WA Cares Fund에 적립되어 추후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장비 및 간병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상 등으로 사용될 예정임
 - 근로자가 민영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동 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Opt-out) 선택권이 주어지며, 우리나라와 달리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 기여분은 없음
 - 2026년 7월부터 장기요양이 필요한 워싱턴 거주자에 한하여 ① 1일 최고 \$100, ② 1인당 최고 \$36,500(평생) 한도 내에서 혜택을 제공함
- 워싱턴주에 이어 펜실베이니아·뉴욕주를 비롯하여 캘리포니아주도 의무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향후 더 많은 주에서 유사한 정책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³⁾
 - 펜실베이니아주의 고령자 및 노인 서비스법(Aging and Older Adult Services Act, House Bill 2779)은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위원회 및 신탁 기금을 설립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뉴욕주도 장기요양서비스 신탁 프로그램을 설립을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신탁법(Senate Bill 9082)을 발의하여 모든 뉴욕 근로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및 지원 관련 공공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 펜실베이니아·뉴욕주의 장기요양보험요율도 워싱턴주와 동일한 개인 급여의 0.58% 수준임
 - 캘리포니아주도 보험청 내 TF를 설치하여 의무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⁴⁾

1) State of Washington(2019), "House Bill 1087"

2) University of Pennsylvania, Penn Wharton Budget Model(2022. 3. 9), "Projecting Medicaid's Long Term Care Expenditures"

3) The center square(2022. 9. 5), "New payroll taxes would fund New York, Pennsylvania long-term care proposals that mirror Washington's"

4)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http://www.insurance.ca.gov/0500-about-us/03-appointments/lcitif.cfm>)